

###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14조 관련)

구분	수당명	지급 대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
기술 분야	1. 기술 정보 수당	<p>가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(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). 다만,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.</p> <p>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(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</p> <p>다. 삭제 &lt;2020. 3. 10.&gt;</p> <p>라.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</p> <p>마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</p> <p>바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</p>	<p>1) 지급액</p> <p>가) 5급 이상: 월 50,000원 이하</p> <p>나) 6급 · 7급: 월 30,000원 이하</p> <p>다) 8급 이하: 월 20,000원 이하</p> <p>라) 지도관: 월 60,000원 이하</p> <p>마) 지도사: 월 50,000원 이하</p> <p>2) 가산금</p> <p>가)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 · 기능분야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,000원 이하, 기능장 · 기사는 월 30,000원 이하, 산업기사는 월 20,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나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(1) 6급 · 7급: 월 10,000원 이하</p> <p>(2) 8급 이하: 월 20,000원 이하</p> <p>다)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

	<p>사. 전산업무(천공·검공 및 자료의 입력·출력업무는 제외 한다)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</p>	<p>1) 지급액</p> <p>가) 3년 이상 근무자: 월 50,000원 이하</p> <p>나)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: 월 30,000원 이하</p> <p>다) 1년 미만 근무자: 월 20,000원 이하</p> <p>(비고)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.</p> <p>2)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</p>
2. 의 료 업 무 등 의 수 당	<p>가. 의무·약무·간호직·보건진료직 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의무·약무·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,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)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 제2항 및 「약사법」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·근무하는 공무원</p>	<p>1) 의무직렬 공무원,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: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</p> <p>2) 약무직렬 공무원: 월 70,000원</p> <p>3) 간호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 외의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: 월 50,000원</p>

		나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	월 50,000원
		다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산물의 검역업무와 「축산물위생 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[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 및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]	월 250,000원 (광역시·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·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,000원 초과 월 500,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)
교육 및 연구 분야	3. 연구 업무 수당	<p>가. 연구직공무원</p> <p>나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(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)</p>	<p>1) 지급액 월 80,000원</p> <p>2)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(지급액)</p> <p>1) 5급 이상: 월 60,000원 2) 6급 이하: 월 40,000원 (비고)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</p>

		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.									
다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, 부장,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	(지급액)	<p>1) 원장: 월 110,000원      2)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: 월 110,000원 이하      3) 부장: 월 100,000원      4) 장학관·교육연구관·장학사·교육연구사: 월 80,000원</p> <p>(비고)      교수,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,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.</p>									
라.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	(지급액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<th>5년 이상</th><th>5년 미만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장학관·교육연구관</td><td>월 22,000원</td><td>월 37,000원</td></tr> <tr> <td>장학사·교육연구사</td><td>월 17,000원</td><td>월 32,000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(비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학관·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(職)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,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,000원을 지급한다.</li> <li>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.</li> </ol>		5년 이상	5년 미만	장학관·교육연구관	월 22,000원	월 37,000원	장학사·교육연구사	월 17,000원	월 32,000원
	5년 이상	5년 미만									
장학관·교육연구관	월 22,000원	월 37,000원									
장학사·교육연구사	월 17,000원	월 32,000원									

		3.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.
4. 교원 에 대 한 보 전 수 당	가.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. 다만,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(兼職)된 사람은 제외한 다.	(지급액) 월 20,000원 (비고)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 일을 기준으로 「공무원보수규 정」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.
	나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4 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 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, 대 학교의 학장·처장·기획연구 실장·교양과정부장	월 60,000원
	다.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·교육 연구관	1) 1·2·3급 상당 직위: 월 70,00 0원 2) 4·5급 상당 직위: 월 10,00 0원
5. 교직 수당	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	월 250,000원
특수 장비 취급 분야	6. 삭제 <202 0. 3. 10.>	
7. 함정 근무수 당	가.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 박(병원선은 제외한다)에 월 10 일 이상 승선·근무하는 사람	1) 지급액 가) 5급 이상: 월 39,000원 이하 나) 6급: 월 32,000원 다) 7급: 월 25,000원 이하 라) 8급 이하: 월 20,000원 이하  2) 지급방법

			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 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 한다.
특수 행정 분야	8. 장려 수당	<p>가.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·구내보선·철도토목·철도건축·전기통신·신호·보안·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나.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·보수·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(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)</p>	<p>1) 일반직 6급 이상: 월 40,000원 이하</p> <p>2) 일반직 7급: 월 38,000원 이하</p> <p>3) 일반직 8급: 월 36,000원 이하</p> <p>4) 일반직 9급: 월 34,000원 이하</p>
		<p>다.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·급수·정수·배수·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	<p>1)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: 월 50,000원 이하</p> <p>2) 가산금            가)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           (1) 연구관: 월 40,000원 이하            (2) 연구사: 월 30,000원 이하            (3)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: 월 20,000원 이하            나) 「수도법」 제24조에 따</p>

		<p>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(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(1) 1급: 월 40,000원 이하</p> <p>(2) 2급: 월 30,000원 이하</p> <p>(3) 3급: 월 20,000원 이하</p>
	<p>라. 위생처리장 · 하수처리장 ·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· 하수 ·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</p> <p>마. 화장장 · 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</p> <p>바. 공원묘지 · 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 ·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</p> <p>사.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</p> <p>아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 · 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</p>	<p>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</p>

	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															
9. 개방 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 직위 수 당	<p>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</p> <p>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 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(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)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</p> <p>2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 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 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 직공무원</p> <p>3)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·행정안전부장 관, 시·도지사 또는 교육감 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 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</p> <p>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 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 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 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 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</p>	<p>(가) 지급액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급대상</th> <th>월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</td> <td>4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2급</td> <td>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2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100,000원</td> </tr> <tr> <td>5급 이하</td> <td>5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나) 가산금</p> <p>지방자치단체의장을 달리하 여 임용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)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 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,000원을 가 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(비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 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.</li> <li>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·연구사, 지도관·지도 사 및 장학관·장학사를 포함 한다.</li> </ol>			지급대상	월지급액	1급	400,000원	2급	300,000원	3급	200,000원	4급	100,000원	5급 이하	50,000원
지급대상	월지급액															
1급	400,000원															
2급	300,000원															
3급	200,000원															
4급	100,000원															
5급 이하	50,000원															
	1) 지급상한액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근무기간</th> <th colspan="2">월 지급 상한액</th> </tr> <tr> <th>4급 이상</th> <th>5급 이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년 미만</td> <td>100,000원</td> <td>70,000원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 2년 미만</td> <td>120,000원</td> <td>9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근무기간	월 지급 상한액		4급 이상	5급 이하	1년 미만	100,000원	70,000원	1년 이상 2년 미만	120,000원	90,000원	
근무기간	월 지급 상한액															
	4급 이상	5급 이하														
1년 미만	100,000원	70,000원														
1년 이상 2년 미만	120,000원	90,000원														
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2년 이상 3년 미만</td><td>180,000원</td><td>150,000원</td></tr> <tr> <td>3년 이상 4년 미만</td><td>300,000원</td><td>250,000원</td></tr> <tr> <td>4년 이상</td><td>450,000원</td><td>400,000원</td></tr> </table>	2년 이상 3년 미만	180,000원	150,000원	3년 이상 4년 미만	300,000원	250,000원	4년 이상	450,000원	400,000원
2년 이상 3년 미만	180,000원	150,000원									
3년 이상 4년 미만	300,000원	250,000원									
4년 이상	450,000원	400,000원									
		<p>2) 지급방법: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</p> <p>(비고)</p> <p>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</li> <li>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(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)</li> </ol>									
10.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	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	<p>1) 지급액</p> <p>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</p> <p>2) 지급방법</p> <p>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</p>									
11. 특수직무수당	가.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	<p>1) 지급액</p> <p>월 50,000원 이하</p> <p>2) 지급방법</p> <p>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</p>									

		정한다.
나. 사서직공무원(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)	5급 이상: 월 30,000원 이하 6급 이하: 월 20,000원 이하	
다. 읍·면·동(보건지소·보건 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·상담소를 포함한다)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,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	월 70,000원 이하	
라. 삭제 <2020. 3. 10.>		
마. 지방자치단체 의회(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)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	(지급액) 1) 3급 이상: 월 120,000원 이하 2) 4급: 월 100,000원 이하 3) 5급: 월 80,000원 이하 4) 6급: 월 60,000원 이하 5) 7급 이하: 월 50,000원 이하  (비고)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.	
바.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	1) 지급액 월 70,000원 이하  2) 가산금 가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,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 나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	

		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(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)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.
사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	(지급액)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 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	
아.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 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[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해양 수산직렬 공무원(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)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]	월 50,000원 이하	
자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공립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공립 초·중·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	월 30,000원 이하	
차. 직무의 중요도·난이도 등이 높은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(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)	1) 지급액: 월 100,000원 이하 2) 지급방법: 구체적인 지급대상, 지급액, 지급기준,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	

		장이 정한다.
12. 우 수 대 민 공 무 원 수당	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의 증 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	<p>1) 지급액: 월 200,000원</p> <p>2) 지급기간: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.</p> <p>3) 구체적인 지급대상·지급방 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다.</p>
13. 비 상근무 수당	<p>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이하 이 호에서 "재난"이라 한다)의 발생 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 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</p> <p>가.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</p> <p>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16조에 따른 지역재 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 는 공무원</p> <p>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</p>	<p>1) 지급액: 1일 8,000원[월 50,000원 이하(가목에 해당하 는 사람은 월 65,000원 이 하)]</p> <p>2) 지급방법: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정한다.</p>

비고: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